

■ **일정안내** ※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 하오니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일시	장소
서류접수 기간	2023.12.15.(금) ~ 2023.12.20.(수), 6일간	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-2 [오산세교 파라곤 견본주택] ※ 12.14.(목) 당첨자 발표 이후 홈페이지 방문 예약 시간 접수

■ **당첨자 자격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동서류 (필수)	개인정보활용동의서	•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
	인감도장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/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제출 생략
	신분증 사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:국내거소신고증/외국인:외국인등록증)
	주민등록표등본(전부포함)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주민등록표초본(전부포함)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 (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시 필요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 (본인/직계 존·비속)	• 계약자 및 직계 존·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직계 존·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
추가서류 (해당자)	청약가점내용확인서	• 견본주택 비치
	배우자 주민등록등본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"전체포함"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피부양 직계존속)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피부양 직계비속)	•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 (피부양 직계존속)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전부포함"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)	•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전부포함"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 (본인 및 피부양 직계비속)	• (본인)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/ "상세"로 발급 • (피부양 직계비속)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/ "상세"로 발급
복무확인서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지속에 가입하고 청약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[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]	

■ **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추가 서류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동 서류 (필수)	해외체류 증빙서류	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채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배우자및 세대원 전원)	•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(동반 체류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) -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추가 서류 (해당자)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(본인 및 세대원)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되지않음

■ **부적격 의심자 소명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부적격 동보를 받은자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,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

■ **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(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)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대리 계약시	당첨자 인감증명서(위임용) 및 인감도장	• 용도 : 계약 위임용/본인발급분(대리발급불가) *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불가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위임장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견본주택 비치)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직계 존비속포함)
 ※ **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24.) 이후 발급분에 한함**
 ※ **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**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※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"전체포함" 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**일정안내** ※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 하오니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일시	장소
서류접수 기간	2023.12.15.(금) ~ 2023.12.20.(수), 6일간	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-2 [오산세교 파라곤 견본주택] ※ 12.14.(목) 당첨자 발표 이후 홈페이지 방문 예약 시간 접수

■ **당첨자 자격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동 서류	개인정보활용동의서	•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
	인감도장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/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제출 생략
	신분증 사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:국내거소신고증/외국인:외국인등록증)
	주민등록표등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주민등록표초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(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시 필요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	•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
추가 서류 (해당자)	배우자 주민등록등본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"전체포함"로 발급
	복무확인서	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(10년이상) 명시

■ **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추가 서류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동 서류 (필수)	해외체류 증빙서류	•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배우자및 세대원 전원)	•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(동반 체류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) -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추가 서류 (해당자)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(본인 및 세대원)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되지않음

■ **부적격 의심자 소명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,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

■ **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(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)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대리 계약시	당첨자 인감증명서(위임용) 및 인감도장	• 용도 : 계약 위임용/본인발급분(대리발급불가) *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불가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위임장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견본주택 비치)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직계 존비속포함)

※ 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24.) 이후 발급분에 한함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"전체포함" 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**일정안내** ※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 하오니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일시	장소
서류접수 기간	2023.12.15.(금) ~ 2023.12.20.(수), 6일간	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-2 [오산세교 파라곤 견본주택] ※ 12.14.(목) 당첨자 발표 이후 홈페이지 방문 예약 시간 접수

■ **당첨자 자격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통 서류	특별공급 무주택 서약서	• 견본주택 비치
	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	•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(인터넷 청약시 생략)
	개인정보활용동의서	•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
	인감도장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/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제출 생략
	신분증 사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:국내거소신고증/외국인:외국인등록증)
	주민등록표등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주민등록표초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 (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시 필요)
추가 서류 (해당자)	배우자 주민등록등본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"전체포함"로 발급
	복무확인서	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/ 군복무기간(10년이상) 명시

■ **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추가 서류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통 서류 (필수)	해외체류 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배우자및 세대원 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(동반 체류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) -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추가 서류 (해당자)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(본인 및 세대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되지않음

■ **부적격 의심자 소명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,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

■ **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(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)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대리 계약시	당첨자 인감증명서(위임용) 및 인감도장	• 용도 : 계약 위임용/본인발급분(대리발급불가) *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불가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위임장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견본주택 비치)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직계 존비속포함)

※ **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24.) 이후 발급분에 한함**

※ **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**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"전체포함" 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**일정안내** ※ 건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 하오니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일시	장소
서류접수 기간	2023.12.15.(금) ~ 2023.12.20.(수), 6일간	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-2 [오산세교 파라곤 건본주택] ※ 12.14.(목) 당첨자 발표 이후 홈페이지 방문 예약 시간 접수

■ **당첨자 자격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통 서류	특별공급 무주택 서약서	• 건본주택 비치
	다자녀 배점 기준표	• 건본주택에 비치,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
	개인정보활용동의서	• 건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
	인감도장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/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제출 생략
	신분증 사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:국내거소신고증/외국인:외국인등록증)
	주민등록표등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주민등록표초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(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시 필요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
추가 서류 (해당자)	출입국사실증명명(본인)	• 신청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1순위 자격 확인)
	배우자 주민등록등본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름) "전체포함"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피부양 직계존속)	•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	주민등록표등본(자녀)	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 또는 직계존속)	•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"상세"로 발급
	한부모가족증명서	• 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 (피부양 직계비속)	• (피부양 직계비속) 만 18세 이상 자녀를 미혼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/ 모두 "상세"로 발급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제출 (임신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임신 증명 및 출산이행 각서	•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작성 (건본주택 비치)
	입양관계증명서	• 자녀가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출
복무확인서	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/군복무기간(10년이상) 명시	

■ **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추가 서류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통 서류 (필수)	해외체류 증빙서류	•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정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)	•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(동반 체류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) -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추가 서류 (해당자)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(본인 및 세대원)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되지않음

■ **부적격 의심자 소명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부적격 동보를 받은자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,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

■ **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(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)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대리 계약시	당첨자 인감증명서(위임용) 및 인감도장	• 용도 : 계약 위임용/본인발급분(대리발급불가) *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불가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위임장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건본주택 비치)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직계 존비속포함)

※ **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24.) 이후 발급분에 한함**

※ **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**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"전체포함" 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**일정안내** ※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 하오니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일시	장소
서류접수 기간	2023.12.15.(금) ~ 2023.12.20.(수), 6일간	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-2 [오산세교 파라곤 견본주택] ※ 12.14.(목) 당첨자 발표 이후 홈페이지 방문 예약 시간 접수

■ **당첨자 자격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동 서류	특별공급 무주택 서약서	• 견본주택 비치
	개인정보활용동의서	• 견본주택 비치
	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	•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
	인감도장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/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제출 생략
	신분증 사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:국내거소신고증/외국인:외국인등록증)
	주민등록표등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주민등록표초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 (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시 필요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 (본인/직계 존·비속)	• 계약자 및 직계 존·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직계 존·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
	주민등록표초본 (피부양 직계존속)	•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/ "상세"로 발급
혼인관계증명서 (피부양 직계비속)	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/ "상세" 로 발급	
추가 서류 (해당자)	배우자 주민등록등본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"전부포함"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피부양 직계비속)	•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/ "전부포함"으로 발급 [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]
	가족관계증명서 (피부양 직계존속)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)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/ "상세"로 발급
	복무확인서	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/ 군복무기간(10년이상) 명시

■ **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추가 서류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동 서류 (필수)	해외체류 증빙서류	•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배우자및 세대원 전원)	•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(동반 체류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) -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추가 서류 (해당자)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(본인 및 세대원)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되지않음

■ **부적격 의심자 소명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부적격 동보를 받은자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,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

■ **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(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)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대리 계약시	당첨자 인감증명서(위임용) 및 인감도장	• 용도 : 계약 위임용/본인발급분(대리발급불가) *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불가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위임장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견본주택 비치)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직계 존비속포함)
 ※ **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24.) 이후 발급분에 한함**
 ※ **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**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※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"전체포함" 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**일정안내** ※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 하오니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일시	장소
서류접수 기간	2023.12.15.(금) ~ 2023.12.20.(수), 6일간	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-2 [오산세교 파라곤 견본주택] ※ 12.14.(목) 당첨자 발표 이후 홈페이지 방문 예약 시간 접수

■ **당첨자 자격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통 서류	특별공급 무주택 서약서	• 견본주택 비치
	자격요건 확인서	• 혼인신고일, 자녀수,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소득확인 (견본주택에 비치)
	개인정보활용동의서	•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
	인감도장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/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제출 생략
	신분증 사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:국내거소신고증/외국인:외국인등록증)
	주민등록표등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주민등록표초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 (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시 필요)
	출입국사실증명원(본인)	• 신청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1순위 자격 확인)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혼인사항 포함하여 발급	
추가 서류 (해당자)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, FAX수신 문서 가능) -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
	소득증빙서류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(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증빙서류[표] 참조) (단,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는 배우자의 세대구성원 포함)
	재직증명서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 (발급처 : 해당 직장 / 세무서) / 근로자 : 재직증명서 /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 제출 ※ 재직증명서 제출시 회사직인날인필수(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)
	배우자 주민등록등본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"전부포함"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)	•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
	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제출 (임신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출산이행 각서	•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작성 (견본주택 비치)
	입양관계증명서	• 자녀가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출
	비사업자 확인각서	•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(견본주택 비치)
	부동산 소유현황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-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 - (발급기관) 해당 행정복지센터
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	•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 및 부속토지의 주택공시가격, 시가표준액,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	
복부확인서	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/ 군복무기간(10년이상) 명시	

■ **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추가 서류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통 서류 (필수)	해외체류 증빙서류	•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일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)	•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(동반 체류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) -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추가 서류 (해당자)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(본인 및 세대원)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되지않음

■ **부적격 의심자 소명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,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

■ **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(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)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대리 계약시	당첨자 인감증명서(위임용) 및 인감도장	• 용도 : 계약 위임용/본인발급분(대리발급불가) *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불가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위임장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견본주택 비치)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직계 존비속포함)

※ **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24.) 이후 발급분에 한함**

※ **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**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"전체포함" 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(2023년 적용)

공급유형			구분	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
	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존 50%)	배우자 소득 無	100% 이하	~6,509,452원	~7,622,056원	~8,040,492원	~8,701,639원	~9,362,786원	~10,023,933원
		부부 모두 소득 有	100% 초과 ~120% 이하	6,509,453원~7,811,342원	7,622,057원~9,146,467원	8,040,493원~9,648,590원	8,701,640원~10,441,967원	9,362,787원~11,235,343원	10,023,934원~12,028,720원
	일반공급 (상위 20%)	배우자 소득 無	100% 초과 ~140% 이하	6,509,453원~9,113,233원	7,622,057원~10,670,878원	8,040,493원~11,256,689원	8,701,640원~12,182,295원	9,362,787원~13,107,900원	10,023,934원~14,033,506원
		부부 모두 소득 有	120% 초과 ~160% 이하	7,811,343원~10,415,123원	9,146,468원~12,195,290원	9,648,591원~12,864,787원	10,441,968원~13,922,622원	11,235,344원~14,980,458원	12,028,721원~16,038,293원
소득기준 초과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배우자 소득 無	140% 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9,113,234원~	10,670,879원~	11,256,690원~	12,182,296원~	13,107,901원~	14,033,507원~	
	부부 모두 소득 有	160% 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10,415,124원~	12,195,291원~	12,864,788원~	13,922,623원~	14,980,459원~	16,038,294원~	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추첨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 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661,147) 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※ (가구원수 산정 기준)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.
- ※ (월평균 소득산정 대상)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9세 이상인 성년자(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 부양) 포함). (단,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)
- ※ (월평균소득)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.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(수입금액)을 근로기간(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)으로 나누어 산정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(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)으로 나누어 산정.
- ※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(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, 신규취업자, 이직자, 신규사업자, 프리랜서 등)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"주택청약 FAQ(국토교통부 발간)"을 확인하여야 하며,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■ 자산보유기준

구분	자산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억3,100만원 이하	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	
주택	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		
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「농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,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•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) 													

■ 소득 증빙 서류 (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인정/ 상기 서류 중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 팩스 사본 인정 X)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 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(원본) ※ 휴직기간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)으로 발급)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 ②,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직인 날인)	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	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/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세무서/국세청 홈택스
	신규사업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, 법인의 재무제표	① 세무서/국세청 홈택스 ②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③ 위촉,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, 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	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/일용직 근로자	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필수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필수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,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(신고소득사실없음)	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
기타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)		①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청구 서류 [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]	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

■ 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 제출서류 (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)

해당자격	자산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부동산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	필수	① 부동산소유현황 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, ② 등기소(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)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
	추가 (해당자)	①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)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) (서울시 : 'ETAX이용안내' 조회/발급)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(서울시 외 : '위택스' 지방세정보) 시가표준액 조회'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④ 농지원부, 축산업 허가증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('농지법', 및 '조지법',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)	①,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,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, 해당 축산과, 토지이음
부동산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	필수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/발급부 부동산 "부동산 소유 현황"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

※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)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.

■ **일정안내** ※ 기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 하오니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일시	장소
서류접수 기간	2023.12.15.(금) ~ 2023.12.20.(수), 6일간	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-2 [오산세교 파라곤 기본주택] ※ 12.14.(목) 당첨자 발표 이후 홈페이지 방문 예약 시간 접수

■ **당첨자 자격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통 서류	특별공급 무주택 청약서	• 기본주택 비치
	자격요건 확인서	• 기본주택 비치 • 혼인신고일, 자녀수, 과거년 근로/사업소득세,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, 월평균 소득 확인
	개인정보활용동의서	• 기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용/본인발급용(대리발급용 불가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제출 불가
	인감도장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/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제출 생략
	신분증 사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주민등록표등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발급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본인)	• 혼인 여부 확인 /성명, 주민번호 전체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출입국사실증명원(본인)	• 신청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1순위 자격 확인)	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• 공고일 이후 발행/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	
소득증빙서류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"소득입증서류 참조" ※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	
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	•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(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)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	
재직증명서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 (발급처 : 해당 직장 / 세무서) / 근로자 : 재직증명서 /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 제출 ※ 재직증명서 제출시 회사직인날인필수 (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)	
추가 서류 (해당자)	배우자 주민등록등본	•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 한함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 포함하여 "전체포함"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)	• 당첨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 산정 가구원으로 포함시 포함
	주민등록표초본 (피부양 직계존속)	• 가구원수 산정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/"전부포함"
	혼인관계증명서 (피부양 직계비속)	• 신청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자로 만 18세 이상 미혼인 자녀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/ "상세"로 발급
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• 입양의 경우(본인 또는 배우자)
	비사업자 확인각서	•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(기본주택 비치)
	복무확인서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(또는 25년)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부동산 소유현황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-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 - (발급기관) 해당 행정복지센터	
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	•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 및 부속토지의 주택공시가격, 시가표준액,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	

■ **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추가 서류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공통 서류 (필수)	해외체류 증빙서류	•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-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)	•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(동반 체류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) -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추가 서류 (해당자)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(본인 및 세대원)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되지않음

■ **부적격 의심자 소명서류 제출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,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

■ **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(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)**

구분	해당서류	체크사항
대리 계약시	당첨자 인감증명서(위임용) 및 인감도장	• 용도 : 계약 위임용/본인발급분(대리발급불가) *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불가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위임장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기본주택 비치)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직계 존비속포함) ※ **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24.) 이후 발급분에 한함**
 ※ **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**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※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"전체포함" 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(2023년 적용)

공급유형			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(2023년 적용)					
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소득 기준 구분	생애최초 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130% 이하	~8,462,288원	~9,908,673원	~10,452,640원	~11,312,131원	~12,171,622원	~13,031,113원
	생애최초 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130% 초과 ~160%이하	8,462,289원~ 10,415,123원	9,908,674원~ 12,195,290원	10,452,641원~ 12,864,787원	11,312,132원~ 13,922,622원	12,171,623원~ 14,980,458원	13,031,114원~ 16,038,293원
추첨제 (30%)	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	160% 초과, 부동산가액 (3,31억원) 충족	10,415,124원~	12,195,291원~	12,864,788원~	13,922,623원~	14,980,459원~	16,038,294원~
	1인 가구	160% 이하 160% 초과, 부동산가액 (3,31억원) 충족	~10,415,123원 10,415,124원~	~12,195,290원 12,195,291원~	~12,864,787원 12,864,788원~	~13,922,622원 13,922,623원~	~14,980,458원 14,980,459원~	~16,038,293원 16,038,294원~

- ※ 본 아파트는 전 세대 전용면적 60㎡초과 주택형으로 공급하여 단독세대(1인가구)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.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661,147) 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※ (가구원수 산정 기준)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단, 임신 중인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.
- ※ (월평균 소득산정 대상)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(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 부양) 포함). (단,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)
- ※ (월평균소득)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.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(2번)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 (수입금액)을 근로기간(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)으로 나누어 산정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(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)으로 나누어 산정.
- ※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(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, 신규취업자, 이직자, 신규사업자, 프리랜서 등)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"주택청약 FAQ(국토교통부 발간)"을 확인하여야 하며,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소득 증빙 서류 (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인정/ 상기 서류 중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 팩스 사본 인정 X)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 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(원본) ※ 휴직기간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)로 발급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	
근로자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 ②,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직인 날인)	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재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사)	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/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세무서/국세청 홈택스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	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, 법인의 재무제표	① 세무서/국세청 홈택스 ②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③ 위촉,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, ③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/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필수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사(직인날인필수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,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(신고소득사실없음)	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	
기타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)	①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 [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]	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	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 (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)

해당여부	서류구분	확인자격	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생애최초 특별공급	자격 입증 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
	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	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소득세납부 입증서류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/세무서	

■ 자산보유기준

구분	자산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억3,100만원 이하	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	
주택	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		
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「농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,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종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 													

■ 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 제출서류 (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)

해당자격	자산증빙 제출서류	발급처	
부동산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	필수	① 부동산소유현황 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, ② 등기소(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)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
	추가 (해당자)	①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)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) (서울시: 'ETAX이용안내' 조회/발급)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(서울시 외: '위택스' 지방세정보) 시가표준액 조회'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④ 농지원부, 축산업 허가증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('농지법' 및 '초지법'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)	①,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,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, 해당 축산과, 토지이음
부동산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	필수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/발급) 부동산) "부동산 소유 현황"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

※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 ※ 상기 자산증빙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) 전원의 자산증빙서류를 포함합니다.